

로렘나무교회 정관

제정 2011. 5. .

제 1 차 개정 2014. 2. 16.

제 2 차 개정 2017. 1. 8.

제 3 차 개정 2021. 2. 28.

전문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합동)에 소속된 교회로서, 예수님 안에서 “쉽, 회복, 전진”을 꿈꾸는 교회이다. 본 교회는 첫째, 말씀으로 청년을 살리는 교회. 둘째, 복음으로 자라나는 세대를 세우는 교회. 셋째, 성숙한 가정, 균형 잡힌 성도를 준비하는 교회. 넷째, 통일한국, 성서한국, 세계선교를 열어가는 교회이다. 본 교회는 우리 시대의 많은 영혼들에게 로렘나무(왕상 19:5)와 같은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참 쉽고 회복을 경험하는 교회이기를 원한다. 이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된 자들을 다시금 세상과 열방으로 파송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섬기는 교회 되기를 꿈꾼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명칭) 본 교회는 ‘로템나무교회’(이하 ‘본 교회’라고 한다)라 칭한다.

제 2 조(위치) 본 교회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운사길 51(안암동 5가 15-23)에 둔다.

제 3 조(목적과 비전) 본 교회는 예배와 교제, 교육, 전도와 선교, 디아코니아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일을 목적으로 삼는다. 특히 예수님 안에서의 ‘쉽과 회복과 전진’을 통해서 이 땅에 통일한국과 성서한국과 세계선교를 이뤄가는 것을 비전으로 삼는다.

제 2 장 교회 정치의 원리

제 4 조(근거) 본 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를 신앙고백의 근거로 삼는다.

제 5 조(정신) 본 교회는 본 교단의 신앙고백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의 신앙고백을 존중하며 역사적 개혁교회가 고백하는 3대 신앙고백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벨직 신앙고백서, 도르트 신조를 따른다.

제 6 조(양심의 자유) 주님만이 양심을 주재하시므로 우리 중 누구든지 신앙에 관계되는 사건에 대하여 각자의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고 아무도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 7 조(교회의 직원과 복음적 동역)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체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직원을 두셔서 복음을 전하고 성례를 시행하게 하셨으며 모든 교인들을 하나님의 성도로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굳게 설 수 있도록 돌보게 하셨다.

교회의 직원과 교인들은 성경과 개혁신교회의 원리 및 정관에 따라 복음적으로 동역하며 상호 존중한다.

제 3 장 교인

제 8 조(자격) ① 본 교회 교인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 자 중 본 교회에 등록된 모든 자들과 교회에 출석하는 그의 미성년 자녀들 및 본 교회에서 입교한 자들이다. 본인이 이적을 요청하였거나 출교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교인의 자격을 상실한다.

② 전향에서 “본 교회에 등록”한다는 것은 본 교회에 6 개월 이상 출석하고 새가족반을 수료한 후 당회의 최종 승인을 거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본 교회의 목사, 전도사·강도사, 목사 및 전도사·강도사의 배우자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빙 후 당회의 승인으로 본 교회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 9 조(의무) 교인은 교회의 정한 예배회와 기도회에 성실하게 출석하고 교회의 성장과 발전에 협력하며, 사랑과 선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 또한, 헌금과 봉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의무를 가진다.

제 10 조(권리) 교인은 교회의 주체로서 교회 회무에 참여하며 교회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각종 회의의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 4 장 직원

- 제 11 조(목사) ① 목사는 본 교회의 목회활동에 종사한다.
- ② 목회활동이라 함은 설교, 교육, 심방, 성례식 집전 등의 활동을 의미한다.
- ③ 담임목사는 대외적으로 본 교회를 대표하고, 담임목사가 궐위 또는 유고될 시에는 임시 당회장이 본 교회를 임시로 대표한다.
- ④ 교회에 교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얻은 자를 담임목사로 청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공동의회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고 공동의회 참석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청빙한다. 공동의회의장은 투표자 3 분의 2 의 찬성과 공동의회 구성원 과반수의 날인을 받은 청빙서를 노회에 제출한다.
- ⑤ 담임목사는 만 70 세까지 시무하며 정년퇴임한 경우, 그밖에 공동의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원로목사로 추대하고 그에 합당하게 예우한다.
- ⑥ 담임목사는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공동의회 재적회원 3 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 ⑦ 담임목사는 만 6년 시무마다 1년의 범위 내에서 안식의 기간을 가질 수 있다. 이 경우, 안식의 기간 및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제직회에서 논의하여 의결한다.
- ⑧ 담임목사의 목회 활동을 돕기 위해 부목사를 둘 수 있다.
- ⑨ 부목사의 초빙 및 연임은 당회에서 결정한다. 이 경우 그 조건(임기, 보수)은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12 조(장로) ① 장로는 교인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일과 권징하는 일에 종사한다.

② 장로는 만 5 년 이상 계속하여 본 교회에 출석하는 만 40 세 이상의 세례교인으로서 디모데전서 3:1~7 절에 열거된 성품, 상당한 식견, 지도력이 있는 자 중에서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제 13 조(권사) ① 권사는 여신도로서 장로와 함께 교인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일을 하되, 특히 질병 및 상해 환자, 기타 환난을 당하는 자, 믿음이 연약한 교인을 돌보아 권면하는 일에 종사한다.

② 권사는 만 5 년 이상 계속하여 본 교회에 출석하는 만 45 세 이상의 세례교인으로서 행위가 성경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며 본 교회에서 집사로 만 3 년 이상 충성되게 봉사한 자 중에서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제 14 조(집사) ① 집사는 목사 및 장로와 협력하여 당회의 감독 아래 교회 운영과 선교 및 구제 활동에 종사한다.

② 집사는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만 30 세 이상의 세례교인 중에서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제 15 조(이명직분자) 타 교회에서 직분(장로, 권사, 집사)을 수여한 자는 그 직분 수여에도 불구하고, 제 12 조 내지 제 14 조에 따른 자격을 충족하고 본 교회에서 위 조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본 교회의 직분자로 본다.

제 16 조(전도사·강도사) ① 목사의 목회 활동을 돕기 위해 전도사·강도사를 둘 수 있다.

② 전도사·강도사의 초빙 및 연임은 당회에서 결정한다. 이 경우 그 조건(임기, 보수)은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17 조(자유휴직과 사직) ① 장로, 권사, 집사가 신병으로 시무할 수 없는 경우 휴직 또는 사직을 당회의 결의로 처리하고, 그 사실을 당회록에 기재한다.

② 전항에 따른 자유휴직의 사유가 사라진 때에는 당회의 결의를 거쳐 복직시킨다.

제 18 조(권고휴직과 사직) ① 장로, 권사, 집사가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당회가 협의결정하여 휴직 또는 사직하게 하고 그 사실을 당회록에 기록한다.

② 전항에 따라 당회가 해당 직분자의 휴직을 결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며, 휴직 기간이 종료하기 7 일 이전에 당회는 해당 직분자의 복직 여부를 결정한다. 만일, 복직시키지 않기로 결정할 때에는 다시 기간을 정하여 휴직처리하고 그 사실을 당회록에 기록한다.

제 5 장 조직

제 19 조(부서) ① 교회 행정을 의결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직회의 의결로 부서를 둘 수 있다.

② 각 부서는 그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 내에 별도의 조직을 둘 수 있고, 그 조직의 설치 및 폐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서장의 제안 후 제직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③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재정부를 둔다.

제 20 조(자치회) 다음과 같이 자치회를 둔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교회 봉사 및 전도사업 등을 위하여 교회 내에 자치조직으로 남성도회, 여성도회, 청년대학부를 둔다.
2. 자치회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회칙을 제정하여 회칙에 따라 운영한다.
3. 자치회는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회에 매년 예산을 신청할 수 있고, 예·결산 모두 제직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동의회에서 확정한다.

제 21 조(소그룹) 교우들이 신앙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교제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돕는 소그룹을 나누어 편성한다. 소그룹의 편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제 22 조(재정위원회) ① 교회의 재정관련 논의 및 예·결산을 위하여 재정위원회를 둔다.

② 재정위원은 당회원, 남성도회 대표 1인, 여성도회 대표 1인, 청년대학부 대표 1인으로 구성하며, 재정실무자는 회의를 돕기 위해 참석할 수 있다.

제 6 장 회의

제 23 조(공동의회) ① 공동의회 회원은 본 교회 등록교인으로서 만 18 세 이상의 세례교인으로 한다. 다만, 청년대학부의 경우는 청년대학부 회칙상 리더로 한다.

② 전향에도 불구하고, 본 교회의 목사, 전도사·강도사, 목사 및 전도사·강도사의 배우자(세례교인으로서 본 교회에 출석하는 배우자에 한한다)는 당회의 승인으로 공동의회 회원으로 한다.

③ 공동의회 임원은 당회 의장과 서기가 공동의회 의장과 서기를 겸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 임원이 궐위 기타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동의회에 출석한 당회원 중 최고연장자의 주관하에 공동의회에서 선출한다.

④ 공동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둔다. 정기회는 공동의회 의장의 소집으로 매년 1~2 월에 한 차례 개최하여, 각종 예·결산 및 감사보고, 각 부서의 사업계획 승인, 각 사역자 선출 등을 의결하며 개최일로부터 1 주일 전에 후보 또는 예비 중 광고를 통하여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임시회는 의장, 제직회의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 등록교인 3 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되며 소집을 요청한 자 혹은 그들의 대표자는 일시, 장소, 안건 등을 1 주일 전에 후보 또는 예비 중 광고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⑤ 법령, 정관 및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6 개월 이상의 장기출타자를 제외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⑥ 공동의회 업무

1. 담임목사의 청빙
2. 각종 예산과 결산의 확정
3. 장로, 권사, 집사의 선임
4. 감사의 선임

5. 재산의 취득과 처분 및 대출 등 채무부담행위

6. 감사의 보고사항 인준

7. 교회 정관의 제정과 개정

8. 기타 법령, 정관에 정한 안건 및 공동의회 중에 제기된 안건 처리

⑦ 공동의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서기, 출석 장로가 기명날인한다. 다만, 재산의 취득과 처분, 교회 정관의 제정과 개정의 경우에는 출석 공동의회 회원 과반수가 기명날인한 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 24 조(당회) ① 당회는 담임목사, 장로로 구성한다.

② 당회장은 담임목사가 하고, 담임목사가 궐위 또는 유고시에는 당회의 결의로 그 노회에 속한 목사 1 인을 청하여 임시당회장이 되게 할 수 있으며, 담임목사가 신병이 있거나 출타한 때에는 장로 중 1 인이 임시당회장이 된다.

③ 정기회의는 월 1 회 당회에서 정한 때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당회장 또는 당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당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④ 당회의 업무

1.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

2. 교인의 입회(교인 지위의 취득)와 퇴회(교인 지위의 상실)

3. 예배와 성례 거행

4. 장로와 집사, 권사의 휴직 및 사직

5. 교회정관과 시행세칙의 개정안 심의

6. 교회 예·결산의 심의

7. 권징사항 심의·의결
8. 부목사, 전도사·강도사 초빙 및 연임 결정
9. 장로와 집사, 권사의 추천 및 교육
10. 기타 공동의회가 위임한 사항

제 25 조(제직회) ① 제직회는 본 교회의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전도사·강도사, 목사 및 전도사·강도사의 배우자(당회의 승인을 받은 배우자에 한한다)로 구성한다. 회장은 제직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하고(당회장은 제직회의 회장을 겸임할 수 없다), 서기는 제직회 회장이 지명하며, 회계는 재정부장이 겸임한다. 회장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제직회 임원이 궐위 또는 유고되었을 경우 새로운 임원은 제직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정기회는 매 분기(1, 4, 7, 10 월) 제직회에서 정한 때에 소집한다. 임시회는 당회나 제직회원 3 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회장이 소집하되, 1 주일 전에 후보 또는 예배 중 광고를 통해 공고되어야 한다. 단, 긴급한 안건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즉시 소집할 수 있으나 다음 회의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위임 또는 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동의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직회의 업무

1. 각 부서의 설치 및 각 부장의 선출, 해임
2. 각 부서의 보고 청취
3. 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정
4. 당회에서 부의한 사항

5. 기타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항

④ 제직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서기, 출석 장로가 기명날인한 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 26 조(회의 성립과 의결 정족수) 위 모든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휴직 중인 직원을 제외한 구성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의결정족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수결이다.

제 27 조(제척 사유) 회의의 안건 중에서 의장 자신에 관한 회무를 다루게 될 경우 각 회의체는 다수결로 임시의장을 선택하여 해당 회무를 진행한다. 회의의 안건 중에서 교인 자신에 관한 회무를 다루게 될 경우 해당 교인은 불출석한 것으로 처리하며 의결권도 없다.

제 7 장 재정

제 28 조(원칙) ① 교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 하에서 운영한다.

1. 교회의 재정에서 차지하는 예배와 교제, 교육, 전도와 선교, 디아코니아 및 교회 운영의 몫은 서로 균형이 잡히도록 한다.
2. 재정의 사용은 항상 투명해야 하고, 결산은 내부 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제직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3. 차입경영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4. 교회의 재정은 최대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재정부장은 매 정기 제직회에 회계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직회원 1인 이상을 포함한 교인 3인 이상이 연명하여 요청하는 경우 재정부장은 회계보고서류의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

② 전항 제 2 호의 내부 감사는 교회 운영에 관한 감사활동에 종사하며, 공동의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감사는 결산을 다루는 공동의회에서 그 결과를 연 1 회 보고한다.

제 29 조(예·결산) 예·결산의 처리는 다음과 같다.

1. 예산은 각 부서 등의 신청을 받아 재정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직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동의회에서 확정한다.

2. 결산은 재정위원회에서 작성하고 감사의 감사의견을 첨부하여 제직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공동의회에 회부하여 확정한다.

제 30 조(재정지출) ① 모든 재정 지출은 공동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안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시행하되, 재정부에서 그 구체적인 집행은 관리한다.

② 예산 항목의 변경 및 총액 기준 20% 미만의 초과지출은 제직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당초 예산액 대비 20% 이상의 총 예산 증액이 요청될 때에는 재정위원회에서 이를 편성하고 이 편성안은 제직회 심의를 거쳐 임시공동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제 31 조(재산의 관리) 교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1. 교회의 재산은 교인 총유의 것이므로 어느 개인도 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교인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도 포기한 것으로 한다.
2. 교회 재산의 취득, 매도, 증여, 교환, 대출 등 채무부담행위, 혹은 용도 변경 등 제반 사항은 재정위원회의 제안으로 제직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단, 단위 당 1 천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재산 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제직회의 의결로 재정부에서 집행할 수 있다.
3. 부동산의 등기는 ‘로템나무교회’ 명의로 하고, 동산의 등록은 ‘로템나무교회’ 명의 혹은 행정상의 편의나 법적 요건에 따라 제직회의 의결로 담임목사, 시무장로 개인의 명의로 할 수 있다.
4. 재 정부는 재산관리대장을 작성 및 보관하고, 정기감사뿐만 아니라 제직회원 5 인 이상을 포함한 교인 7 인 이상의 재산관리대장에 대한 열람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 32 조(담임목사의 보수 및 목회활동비) ① 담임목사의 보수는 시행세칙에 따른다.

② 담임목사에게는 퇴직금과 더불어 법률이 정한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의 사업자 측 부담금을 지급한다.

③ 보수 및 목회활동비와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행세칙을 따른다.

제 33 조(회계연도)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

제 8 장 권징

제 34 조(권징의 원칙) 교회의 질서와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 권징은 필요하다. 모든 권징은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뜻에 근거해야 한다.

제 35 조(권징의 과정) 교인 중에 반성경적 행위로 그리스도의 뜻을 훼방하거나 제직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무단히 6 개월 이상 본 교회의 예배 기타 회의에 계속 출석치 아니한 경우에 목사 또는 장로는 이를 심방하고 수차 권면해야 한다. 본인이 끝내 돌이키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될 때 당회는 이를 기록한 후 권징안을 마련하여 심의·의결한다.

제 36 조(권징의 종류) 권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근신 : 교인으로서의 권리에 대한 일시적 정지
2. 수찬정지 : 성찬식 참여 금지
3. 출교 : 교인으로서의 자격 박탈

제 9 장 정관개정 및 효력

제 37 조(개정) 본 정관은 당회 및 제직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동의회 재적회원 3 분의 2 이상의 출석, 출석회원 5 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 38 조(시행세칙) 본 정관을 보완하는 시행세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2017. 1. 8.)

제 1 조(효력) 본 정관은 공동의회를 통과함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된다.

제 2 조(경과규정) 본 정관 개정 전 교인, 장로, 권사, 집사 및 공동의회회원은 본 정관
개정에 따른 교인, 장로, 권사, 집사 및 공동의회회원으로 본다.